

### 31.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8년 9월 21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18년 9월 28일
- 상정일자 :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18년 10월 10일), 원안가결

#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)

##### □ 제안이유

-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「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」의 존속기한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현재 기준에 맞게 제명 및 기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# □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(「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」를 「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변경)
- 조항 정비(안 제2조, 안 제4~6조)
- 존속기한 신설(부칙 제2조)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재규)

##### □ 개정취지

- 개정 조례안은 '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'을 위해 설치·운용 중인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(2018.12.31)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제명 및 일부 조항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# □ 적법성 여부

-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, 조례의 일부 조항을 '법령정비 기준(법제처)'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먼저, 제명 정비는 대구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조례 대부분이 제명에 '설치'(또는 '설치 및 운용') 문구를 사용<sup>1)</sup>하고 있어 이를 본 조례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며,  
※ 현 행)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 
개정안)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- 안 제2조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'법령정비 기준(법제처)'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.
- 부칙(존속기한)은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.

1) 대구시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 설치 조례(13개) 중 제명에 '설치' 문구가 없는 조례는 본 조례와 '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' 2개뿐임.

□ 검토결과

- 산업단지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, 또 일부 조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해당 없음.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